

충청북도청주홍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(안)

충청북도 청주홍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명 중 "홍덕사지" 를 "고인쇄박물관"으로 한다

제1조(목적) 중 "문화재보호법 제39조"를 "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"로 "홍덕사지" 를 "고인쇄 박물관"으로 한다.

제5조(관람료징수) 중 "홍덕사지사무소"를 "청주고인쇄박물관"으로 한다.

【 별지 제1호서식 】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(별지 제1호 서식)

청주 고인쇄 박물관 관람요금표

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.

| 구 분 | 개 인 | 단 체 | 비 고 |
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어 른 | 300원 | 200원 | 25세~64세 이하인 자 |
| 청소년및군인 | 150원 | 100원 | 13세~24세 이하인 자 하사이하의 군인 |
| 어 린 이 | 100원 | 50원 | 7세~12세(국민학생 포함)이하인 자 |

※ 단체는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.

○ 관람시간

-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: 09:00 ~ 18:00
-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: 09:00 ~ 17:00

1993. 11. 일

충청북도 청주고인쇄 박물관장